

선	기관의장
람	



제645호 2022년 8월 30일

발행자 : 익산시청

발행처 : 홍보담당관

## 고 시

- 익산시 고시 제2022-148호 익산 역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 고시 ..... 1
- 익산시 고시 제2022-15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3

##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2-2388호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6

회								
람								



익산시 고시 제2022-148호

## 익산 역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02-314호(2002.11.15.)로 지구지정, 익산시 고시 제2003-83호(2003.12.12.) 개선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익산시 고시 제2020-226호(2020.12.30.) 변경승인, 익산시 고시 제2021-156호(2021.09.14.) 사업시행인가 고시, 익산시 고시 제2022-127호(2022.07.30.) 변경승인 된 역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공사 완료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937)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8월 30일

익산시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사업의 종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 명칭 : 익산 역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익산시 송학동 85-15번지 일원
- 면적 : 33,784m<sup>2</sup>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 익산시장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 4. 준공인가 내역

#####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84	6	국지 도로	571	소로1-15	소로1-15	일반도로	-	의산6 ('01.01.16)
기정	소로	3	86	6	국지 도로	88	소로1-15	소로3-84	일반도로	-	의산15 ('04.02.24)
기정	소로	3	87	6	국지 도로	89	소로1-15	소로3-84	일반도로	-	의산15 ('04.02.24)
기정	소로	3	88	6	국지 도로	74	소로1-15	소로3-84	일반도로	-	의산15 ('04.02.24)
기정	소로	3	89	6	국지 도로	101	소로3-84	소로3-88	일반도로	-	의산15 ('04.02.24)
기정	소로	3	1414	4	특수 도로	84	소로3-87 (송학동 82-3대)	소로3-88 (송학동 86-6도)	보행자 전용도로	-	의산15 ('04.02.24)

##### 나. 주차장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합계	-	-	-	8,162	
기정	1	주차장	송학동 885번지 일원	634	의산시 고시 제2020-226('20.12.30.)
기정	2	주차장	송학동 85-5번지 일원	7,528	의산시 고시 제2020-226('20.12.30.)

##### 다. 공동이용시설

구 分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노 인 정	송학동 93-2번지 일원	180	
공동이용시설	송학동 91-4번지 일원	390	

익산시 고시 제2022-151호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면 및 서류는 익산시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익 산 시 장

2022년 8월 22일

1. 사업명 : 익산시 송학동 크레지움 캐슬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호림주택 주식회사 대표 남석곤

3. 위치 : 익산시 송학동 336 외 26필지

4. 사업내용

가. 대지면적 : 13,962.1m<sup>2</sup>

나. 건축면적 : 2,751.142m<sup>2</sup>

다. 연면적 : 50,542.8647m<sup>2</sup>

라. 규모 : 지하2층/지상27층, 주4/부3, 294세대

마.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바. 공급방식 : 공동주택(아파트) / 임대

사. 사업비 : 67,654백만원

아. 사업기간 : 2020. 5. ~ 2022. 10.

5. 주요변경내용

- 확정 측량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 및 건폐율, 용적률 등 변경

- 부대복리시설 구조 변경 등

6. 승인번호 : 2020-주택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2020. 03. 12.)

7.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와 같음(익산시 주택과 비치)

8. 의제처리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 익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6	송학 크레지움 지구단위계획구역	송학동 336번지 일원	20,103	증)72.2	20,175.2	금회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m <sup>2</sup> )	결정사유
변경	36	송학 크레지움 지구단위계획구역	송학동 336번지 일원	20,175.2	예정좌표측량 및 토지분할측량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정정

### ②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변경”

####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없음”

####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가. 교통시설 “변경없음”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9	25 (25)	주간 선 도로	1,210 (237)	대로3~7 송학동 389~1답	대로3~2 모현동 604~1대	일반 도로		건설 299 (86.07.04)	( )은 구역내 개설
기정	소로	3	66	6~7 (1)	국지 도로	166 (65)	대로3~9 송학동 360답	소로2~48 송학동 322~156 전	일반 도로		전북 44 (77.03.07)	( )은 구역내 개설

####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 변경사유 : 예정좌표측량 및 토지분할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증 · 감	변경	위치	면적 (㎡)			
						기정	증 · 감	변경	
36	-	20,103	증)72.2	20,175.2		①	13,881	증)81.1 <b>13,962.1</b>	공동주택용지
						②	210	감)3.9 <b>206.1</b>	현황도로 확폭(B=2.4~3m)
						③	74	감)3.0 <b>71</b>	도시계획도로 (소로3-66호선, B=1m)
						④	5,938	감)2.0 <b>5,936</b>	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B=25m)

#### 5.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36	①	용 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3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27층 이하

####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 □ 기반시설분담계획

-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며, 주변지역의 통행여건개선을 위해 본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는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

##### □ 기타

- 공공보행통로
  - : 소로2-31호선과 소로3-66호선에 접하여 설치하는 공공보행통로(B=2~2.5m)는 주변 도로와의 연계 및 보행연속성을 고려하여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담장 등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시설물과 보행을 방해하는 보행지장물을 설치 불허함으로써 공공의 보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함
  - 또한, 사용승인 후 공공보행통로내 포장 변경 및 보행지장물 설치 등 임의적 변경 불가함
-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외의 사항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내용 준수

#### ③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변경없음”

익산시 공고 제2022-2388호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7일

익 산 시 장

##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21.10.19)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담례품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담례품의 종류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7조)
- 다.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 마.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24조)

### 3. 의견 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2022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참조 : 행정 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단체 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제출할 곳 : (우) 54622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전화 : 063-859-5721, 팩스 : 063-859-5059)
-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장수형 주무관(☎ 859-5721)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익산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선정(법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 포함)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행정지원과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인
3.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인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1인
5.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1인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인

③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임기는 답례품의 선정 및 운영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익산시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익산시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익산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10.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익산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익산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익산시 다이로움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익산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기타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영 제5조제1항에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등의 확인
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금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운용을 위해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및 위원회 수당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의 모집·운용을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행정지원과장
2. 기금출납원 : 총무계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익산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행정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2인
  - 나.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인
  - 다. 기타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2인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 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위원회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1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에서 제6조에 따라 담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우선 담례품의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2조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용 및 제23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성·운용하는 담례품 선정 위원회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담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 ④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의 설치·기금 계좌의 개설이 된 경우에는 기금 계좌로 관리·운용해야 한다.

제3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부칙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